

대구지방법원 2021. 1. 13 선고 2020나31441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1. 1. 13 선고 2020나314418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20. 7. 10 선고 2018가단18501 판결

전문

원고,피항소인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마

담당변호사 조병홍

피고,항소인 1. D

2. F

3. G

4. H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화성

변론 종결 2020. 12. 16

판결 선고 2021. 1. 13

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. 7. 10. 선고 2018가단18501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D는 6,157,944원, 피고 F은 2,639,118원, 피고 G, H은 각 1,759,4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. 7. 25.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 의,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각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백정현판사 권형관판사 권비룡